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8. 9. 4.

총무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8. 9. 4.)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홍 기

가. 개정이유

도화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구획이 정리됨에 따라 도화1동사무소 소재지를 구획정리된 후의 신지번으로 변경표시하고, 주택개량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 조합에서 시행하여 '98. 9월경 입주예정인 도화제2지구 재개발 아파트단지가 도화제1동과 도화제2동으로 분리되어 생활권,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동경계 조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도화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구획이 정리됨에 따라 도화1동사무소 소재지를 구획정리된 후의 신지번으로 변경표시

○ 주택개량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의 도화제1동 관할구역(도화동 348-1호 외 292필지 0.03㎡)을 도화제2동으로 편입하여 동일 아파트가 2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야기되는 불편 사항 및 불합리를 해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20일경에 입주예정인 도화동 제2지구 재개발아파트단지는 생활 여건이 동일함에도 도화제1동과 도화제2동으로 행정동이 분리되므로써, 앞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행정능률의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제2지구의 도화제1동 관할구역인 도화동 348번지1호외 292필지 0.03km<sup>2</sup>지역을 행정운영상 도화제2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을 단일화하므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도화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96년 9월 25일 준공되고 등 사업과 관련한 토지구획정리가 '97년 7월 26일 완료됨으로써 도화제1동사무소의 소재지가 구획정리전에는 도화동 362번지 14호였으나 구획정리후에는 도화동 357번지 8호로 지번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제1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화제2동은 현재 2,920세대에 인구가 7,914명에서 1,707세대 약 6,818명이 증가된 4,627세대 14,732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업무인계인수와 각종 공부정리 및 주민홍보 등의 제반 준비사항등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재개발 사업시행전 자동차진입로 및 인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교통대란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사업시행부서인 토목과, 주택과, 재개발과등 관계부서의 현장확인후 대책 마련하겠음.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 지?
- 답변요지(문충실 총무국장) : 현재 불합리한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추후 검토, 조정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제출년월일 : 1998. 8.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도화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구획이 정리됨에 따라 도화1동사무소 소재지를 구획정리된 후의 신지번으로 변경표시하고, 주택개량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 조합에서 시행하여 '98. 9월경 입주예정인 도화제2지구 재개발 아파트단지가 도화제1동과 도화제2동으로 분리되어 생활권, 경재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동경계 조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도화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구획이 정리됨에 따라 도화1동사무소 소재지를 구획정리된 후의 신지번으로 변경표시
- 주택개량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의 도화제1동 관할구역(도화동348-1호외 292필지 0.03km<sup>2</sup>)을 도화제2동으로 편입하여 동일 아파트가 2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야기 되는 불편사항 및 불합리를 해소.

## 3. 주요토의 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4조 제5항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의견조사 : 편입 대상지역의 주택개량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 조합명의 주민의견 및 시·구의원 의견 수렴

※ 서울특별시와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사전협의[행정 13120-1078('98. 7. 23)호]

라. 기 타 : 신·구조운 대비표(따로붙임)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1의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도화제1동"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등 관 할	
			전지역 관할	일부 지역 관 할
마포구	도화제1동	도화동 357-8		도화동중 16-5를 기점으로 동 175-1, 동176-1, 동179-12, 동 341, 동347-2, 동6-27을 경유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동363-143에 이르는 도로의 이 복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 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 분	동 사 무 소 명 칭	동 사무 소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할		구 분	동 사 무 소 명 칭	동 사무 소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할	
			전 지역 관 할	일부 지역 관 할				전 지역 관 할	일부 지역 관 할
(생략)				(현행과 같음)					
마포구	도 화 계 1 동	도 화 동 362-14	도화동중 16의5를 기점으로 동175의1, 동176의1, 동179 의12, 동341, 동 347-2, 동347의 115, 동399의3, 동376의 62, 동 376의 198, 동 376의 234, 동 376의185를 경유 동376의 143에 이르는 도로 이북 지역		마포구	도 화 계 1 동	도 화 동 357-8	도화동중 16-5를 기점으로 동175-1, 동176-1, 동179-12, 동341, 동347-2, 동6-27을 경유하여 주택개발 재개발 도화구역 제2지구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동363-143 에 이르는 도로의 이북지역	

# 桃花 第1, 2洞 境界調整 對象 現況



□ 調整對象地域 現況(도хва제1동 일부 → 도хва제2동)

구분	현재		조정		조정후				
	면적	세대 인구	면적	세대 인구	면적	세대 인구			
편입되는 지역	0.27 km <sup>2</sup>	3,726 명	10,929 명	0.03 km <sup>2</sup>	-	-	0.24 km <sup>2</sup>	3,726 명	10,929 명
편입받는 지역	0.31 km <sup>2</sup>	2,920 명	7,914 명	0.03 km <sup>2</sup>	1,707 명	6,818 명	0.34 km <sup>2</sup>	4,627 명	14,732 명

縮尺 = 1 : 5,000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1988. 5. 1.  
조례 제12호

- 개정 1989. 5.29 조례 제 83호
- 1992.10. 7 조례 제207호
- 1993. 7.24 조례 제228호
- 1994. 8. 8 조례 제257호
- 1994.10. 4 조례 제266호
- 1995.11.30 조례 제31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명칭, 관할 구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과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장) ①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4. 8. 8)

②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동사무소의 직제, 관장사무) 동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29)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3. 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망원제1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3년 6월 14일부터 적용하고, 염리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3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1항은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중 도화제1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4년 1월 24일부터, 용강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3년 12월 23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1994.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89. 5.29, '92.10. 7, '93. 7.24, '94. 8. 8, '94.10. 4, '95.11.30)

###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 지 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마포구	아현제1동	아현동 417-7		아현동중 마포로 이동지역
	아현제2동	아현동 339-3		아현동중 마포로이서 지역으로서 아현동 267의 5를 기점으로 282의 2, 동 339의 3, 동 341의 2와 동 350의 1을 경유, 동 350의 4에 이르는 도로 이북지역
	아현제3동	아현동 615-1		아현동중 아현 제1, 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공덕제1동	공덕동 29-6		공덕동중 105의 3을 기점으로 동 105의 51을 경유 동 118의 1에 이르는 도로 이동지역
	공덕제2동	공덕동 378-6		공덕동중 공덕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공덕동	신공덕동 26-4	신공덕동	
	도화제1동	도화동 362-14		도화동중 16의 5를 기점으로 동 175의 1, 동 176의 1, 동 179의 12, 동 341, 동 347-2, 동 347의 115, 동 399의 3, 동 376의 62, 동 376의 198, 동 376의 234, 동 376의 185를 경유 동 376의 143에 이르는 도로 이북지역
	도화제2동	도화동 346-3		도화동중 도화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용강동	용강동 259-1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대흥동	대흥동 32-29		대흥동중 대흥동 16의 63호를 기점으로 16의 92호를 경유 3의 29호를 연결하는 10도로를 경계로 한 이남지역
	염리동	염리동 147-14	염리동	
노고산동	노고산동 1-50		노고산동중 신촌로타리를 기점으로 노고산동 56의 90호를 연결하는 도로 이서지역을 제외한 전역과 대흥동중 대흥동 16의 63호를 기점으로 16의 92호를 경유 3의 29호를 연결하는 10m도로를 경계로 한 이북지역 및 신수동중 용산선(철도)을 경계로한 동북지역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 지 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마포로	신 수 동	신수동 371-18	현 석 동 구 수 동	신수동중 노고산동장이 관할하는지역을 제외한 지역
	창 전 동	창전동 145-3	창 전 동	
	상 수 동	상수동 356-4	상 수 동 하 중 동 신 정 동 당 인 동	
	서 교 동	서교동 369-8		서교동중 동교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동 교 동	동교동 153-33		서교동중 338의 20을 기점으로 345의 30에 이르는 성산로 동북지역과 노고산동중 신촌로타리를 기점으로 노고산동 56의 90호를 연결하는 도로 이서지역
	합 정 동	합정동 459-5	합 정 동	
	망원제1동	망원동 403-22		망원동중 망원 제2동장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역
	망원제2동	망원동 436-42		망원동중 망원동 482의 7을 기점으로 453의 44에 이르는 구거와 205의 2,304의 5,304의 3 망원제방을 경유하여 한강수면 영등포구 경계까지 이르는 직선의 서북지역
	연 남 동	연남동 223-91	연 남 동	
	성산제1동	성산동 275-3		성산동중 119번지를 기점으로 동185, 동 354의 2에 이르는 사천 이동지역
성산제2동	성산동 147-21	중 동	성산동중 성산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상 압 동	상암동 140-3,8	상 압 동		